



교단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한국 교회 교단연금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포럼]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효창교회 (온라인 중계)

사회 : 이현주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제발표

순서 1.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 분석

김수일 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P. 3

순서 2. 성경적 관점의 연금(은급)제도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P. 21

■ 논찬

박영근 장로 (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배원기 교수 (홍익대 경영대학원, 회계사, 예장통합연금재단 前 감사)



신동식 목사 (빛과 소금교회,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포럼

교단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 한국 교회 교단연금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2020. 9. 3.(목) 10:00~12: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페이스북, 유튜브 실시간 중계  

주제 발표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 분석

- 김수일 간사_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

- 최호윤 회계사_교회재정건강성운동

논찬 및 토론

- *논찬자 | 연금재단 관계자의 시선 박영근 장로 (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 연금재단 감사의 시선 배원기 교수 (홍익대 경영대학원 회계사)
- 목회자의 시선 신동식 목사 (빛과소금교회,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2005년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과 함께합니다.



문의 | 김수일 간사
02-6951-1391 cfan05@hanmail.net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 분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

교단연금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젊은 목회자와 은퇴를 앞둔 목회자간 갈등, 교회규모에 따라 목회자의 노후가 갈리는 현실 등의 문제에 대부분의 교단은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연금이란 제도의 특성과 연금재단의 운영상 문제로 인함이다.

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연금이란 본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가 한참 남은 젊은 목회자는 당장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걱정인 반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자는 수령할 급여가 주 관심사여서 한정된 기금재원에 대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즉, 교단연금의 존재 의의를 살펴 성경적 관점의 연금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단연금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이다. 교단연금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져간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표는 이러한 교단연금의 방향성을 논하기에 앞서, 연금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연금제도의 특징을 검토하고 교단연금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一] 교단연금구조에 대한 논의

1. 공적 연금제도의 의의

연금(年金)이란 일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금 지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금융감독원, 2015; 200-201)

연금은 크게 사회보장성격과 공로보상성격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즉, 먼저 공적연금이 탄생하였고,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적 금융상품으로도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성격]

개인이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 후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은퇴 후 보유자산 및 은퇴 후 소득¹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모두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의 빈곤 노인은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은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에 의해 도입된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이다.² 이것은 복지국가 모델의 시작이었고, 이후 약 50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이 퍼지게 되었다.³ 대한민국에선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¹ 은퇴 후 계속적인 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 (1)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보장성격의 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 (2) 퇴직연금,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 (3) 제3자로부터의 지원되는 소득 (국가, 단체, 가족 등)
- (4) 제2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은퇴 후 시작한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등)

² 1889년, 독일은 정규 생산직 근로자와 저소득 사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강제가입 기여형 공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순수하게, 노동자의 노후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그는 사회주의 진영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보수주의 세력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적인 복지정책을 내정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1872년, 당시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 황제인 빌헬름 1세에게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881년, 빌헬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통해 의회에 칙서를 보내게 되고 이로부터 약 10년간 단계적으로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한다.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년보험(공적연금)을 도입한다. 이것이 복지국가 모델의 시작이었고, 이후 약 50년이 지나 유럽전역에 이러한 복지국가 개념이 퍼지게 된다. (권혁철, 2015; 한국경제)

³ 사회보장제도에관,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을 포함한 6개의 항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져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이 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각각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①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 국민연금)

다. 이렇듯,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그 역사를 같이하였다.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또는 빈곤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보험료의 존재 여부이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급여를 수령하는 사회보험의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빈곤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별도의 연금납입금은 없이 지원하는 공공 부조 형태의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장가입자⁵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의 노후를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가 함께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둘째, 납입액에 따라 받을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이다. 즉, 불입한 원금의 손실 위험을 연금공단이 떠안는 확정급여형태의 제도이다.

셋째,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보장책을 겸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보장을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노후 보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스스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첫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둘째, 국가는 장기 저축 보험과 연금 저축 상품에 비과세 내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국가는 주업에서 은퇴 후 가능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중에,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가 발전된 형태로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 후 일시 또는 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에

②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예, 기초연금).

③ 사회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생략)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략)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⁴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연금 이전에 퇴역군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에는 그리스 군인연금 지급 (BC 400), 초기 로마시대 종신연금제 (BC 201), 영국 해군장교연금 (1667년), 미 연방정부 상이군인연금 (1789년) 등이 있다. (남상욱(2014), 연금론 강의록)

⁵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9조, 제88조)

대한 대가로서 전액 사용자(회사)가 납입하는 것이 특징이다.⁶ 이렇게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이중으로 노후가 대비된다.⁷

[공로보상성격]

연금 역사의 또 다른 기원은 퇴역군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특수직역연금⁸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공무원과 군인, 교사에 대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의 근원적 성격은 국민에 대한 봉사⁹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 것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로보상을 위한 지급'이란 특수직역연금의 특수성은 많이 희석되었다.

2. 사적 연금제도의 의의

연금은 일시금 지급과 대비되어 지속적인 소득의 발생이란 속성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 이외에도 사적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보장을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 저축 보험과 연금 저축 상품에 비과세 내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러한

⁶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금에 대해 임금후불설과 공로보상설 중 임금후불설의 관점을 취한다. 즉,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가 아니고,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이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가 발전된 형태로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⁷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로 나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하여 회사마다 고유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개인도 가입가능한 연금상품이다. 이 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내지 제10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인,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 외에 큰 차이점이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근거가 되어 개인연금으로 분류된다. 세제혜택은 동일하다.

⁸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에는 그리스 군인연금 지급 (BC 400), 초기 로마시대 종신연금제 (BC 201), 영국 해군장교연금 (1667년), 미 연방정부 상이군인연금 (1789년) 등이 있다. (남상욱(2014), 연금론 강의록)

⁹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적연금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사에서 취급)와 연금저축보험, 장기 저축 보험(보험사에서 취급)으로 나뉜다.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납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납입금과 투자손익을 취하거나 확정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납입한 사람이 많이 수령하게 되는 전형적인 수익자부담식 연금이다.

3. 사회 연금제도의 구조분석

앞서 언급한 연금제도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류		연금보험료 납입주체	납입금액	연금급여	연금급여의 가치변동 위험 부담자
공적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연 소득에 비례	소득재분배를 반영한 확정급여	국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국가	-	-	국가
	특수직역 연금 ¹⁰	특수직역자와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	연 소득에 비례	소득재분배를 반영한 확정급여	국가 (각 공단)
퇴직연금		사용자가 전액 부담	급여에 비례	납입금 + 투자손익	DB형 : 사용자 DC형 : 근로자
개인 연금	연금저축	개인이 전액 부담	개인이 선택	납입금 + 투자손익	상품 가입자
	장기 저축보험			가입자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보험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또는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결정되나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를 반영하여 납입금액이 적은 가입자와 많은 가입자 간에 연금급여액의 차이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부유한 국민과 가난한 국민간의 소득격차를 줄였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 간의 소득격차를 줄였다.

다른 특징으로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이 전액 납입하여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반면,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사용자 또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¹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차 공무원 연금 개혁(2016) 이후의 공무원연금모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4. 교단연금제도의 구조분석

사회의 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목회자의 노후보장책인 교단연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교단연금은 각 교단마다 운영하고 있고 연금의 구조와 운영규정도 저마다 다르다. 여기에선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비영리법인 현황(2020.06)¹¹을 근거로 연금재단을 보유한 8개의 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¹²

Num	법인체명	교단명	설립일	홈페이지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연금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989.12.14	www.pension.or.kr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은급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2001.06.27	https://www.eunkub.org/
3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은급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2002.06.08	https://www.kspension.or.kr/
4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1992.07.03	www.prok.org
5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1989.09.08	http://www.kmcpension.or.kr/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역자공제회	기독교대한성결교	1997.08.30	https://www.kpension.org/
7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예수교대한성결교	2002.10.15	http://skpension.org/
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05.10.06	http://www.khsp.or.kr/

(* 이하, 각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은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예장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는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는 예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기하성으로 줄여 표현한다.)

¹¹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¹² 2020년 7월, 각 교단의 연금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함.

교단명	기금 자원	납입금액	연금급여
예장통합	가입자와 교회(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 * 노회부담금 별도로 추가 적립 (상회비 3%)	호봉제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예장고신	가입자와 교회가 함께 부담 (비율 자유)	호봉제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기장	가입자와 교회가 함께 부담 (비율 지정)	4 단계 선택제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예성	가입자와 교회(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 * 가입금 존재	소속교회 본봉의 10분의 1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감리교	가입자부담금 + 교회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 납부 * 교회부담금 : 경상비결산액에 비례하여 차등납부 * 가입금 존재 * 감리회부담금 별도로 추가적립 (본부예산의 20%)	-	목회연한에 따라 지급
기성 (2001년 이전 ¹³)	가입자부담금 + 교회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 정액제 * 교회부담금 : 경상비결산액에 비례하여 차등납부	-	목회연한에 따라 지급
기성 (2001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 교회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 호봉제 * 교회부담금 : 경상비결산액에 비례하여 차등납부 * 가입금 존재	-	수익자부담연금액 + 복지성연금액 * 가입자부담금채원 연금 =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 교회부담금채원 연금 = 납입기간에 따른 확정급여
예장합동	연금 + 기금 * 연금납입금 : 가입자와 교회(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 (단, 교회형편에 따름) * 기금납입금 : 교회, 총회, 수익기관에서 예산 등에 따라 연 1회 납입	계약에 따라 선택 (사적연금 과 유사)	연금 + 기금 * 연금급여 =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 기금급여 = 납입기간에 따른 확정급여
기하성	가입자부담금 + 교회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 호봉제 * 교회부담금 : 경상비결산액에 비례하여 차등납부	-	수익자부담연금액 + 복지성연금액 * 가입자부담금채원 연금 = 납입금에 따른 확정급여 * 교회부담금채원 연금 = 납입기간에 따른 확정급여

¹³ 활천 vol.545 no.4(1999), vol.577 no.12(2001)

각 교단을 연금구조에 따라 총 3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¹⁴

(1) 수익자부담연금 :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 예성교단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 예성교단의 경우 가입자와 교회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확정된 금액의 연금급여를 수령한다. 기장의 경우 현재의 연금제도 이전에는 교단 내 모든 교회가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 단일금액제도였으나, 2012 년 이후 특약을 신설하여 기본 금액보다 많이 납입하고 연금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총 4 가지의 선택지를 두었다.

(2) 수익자부담연금과 복지성연금의 혼합형 (소득재분배형) : 기성(현재), 예장합동, 기하성

기성(현재)과 예장합동, 기하성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크게 2 가지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① 일부는 호봉제 내지 계약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선택하여 납입한 후 연금급여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② 또 다른 일부는 교회경상비결산액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연금급여는 연금보험료의 납입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납입기간에 따라 지급하여 목회자간에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복지성연금 : 기감

감리교¹⁵의 경우엔 각 교회가 교회경상비 결산액에 근거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목회자의 경우 3 년마다 한 달치 생활비를 납입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한다. 반면에, 연금급여는 납입금액에 무관하게 목회연한에 따라 지급하여 복지성연금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기성도 과거에 감리교와 유사한 연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01 년 이후에는 예장합동과 기하성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소결

현재 교단연금의 구조는 교단별로 상이하고, 수익자부담형, 혼합형, 복지형의 구조가 혼재한다. 교단연금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사적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과 교회 내의

¹⁴ 또한, 8개의 연금재단 모두 납입한 금액에 따른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연금기금의 운영손익에 대한 위험을 연금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¹⁵ 감리교는 2008년 신은급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도상 문제점(교역자를 3등분하여 차별대우하는 오류)으로 인하여 많은 교역자들의 반발이있었다. 신은급제도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로 약 10년간 표류하다 2016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 기존 은급법에 준하는 은급제도로 회기한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김교석, 2019; 기독교타임즈)

사회보장제도 내지 공로보상제도로 보는 관점 등 교단연금의 의의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二] 교단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논의

1. 재단운영 관련 사건사고 요약

‘예장통합’ 불법대출과 투자금 회수지연 등으로 얼룩진 납골당 사업 (2002~현재), ‘감리교단’ 신은급법 졸속 재정에 따른 가입자 반발로 인한 신은급법 폐지 (2008~2016), ‘예장통합’ 前 특별감사위원 등이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건 (201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 前 이사장 서상식 목사 등이 연금자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 (2016)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고, 현재에도 기금운영부실 논란, 연금재단 이사회의 규정신설 강행 등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¹⁶

2. 연금재단 운영현황 비교분석

1) 연금상품의 고유위험과 교단연금재단의 법적지위

이러한 사건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연금이 가지는 고유위험을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은 고객이 납입금을 불입하면 이를 모아서 투자대리인이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이러한 투자상품을 간접투자상품이라고 한다. 간접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대리인이 사적이익¹⁷을 추구할 위험이 고유한계로 작용한다. 때문에, 간접투자상품을

¹⁶ ① 예장통합, 불법대출과 투자금 회수지연 등으로 얼룩진 납골당 사업 관련 기사
(국민일보; 이사야, 최기영, 유영대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1273>
② 감리교단, 신은급법 졸속 재정에 따른 가입자 반발로 인한 신은급법 폐지 관련 기사
(기독교타임즈; 김교석 목사) <https://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05>
③ 예장통합, 前 특별감사위원 등이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건 관련 기사
(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1020074000053>
④ 기하성, 前 이사장 서상식 목사 등이 연금자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 관련 기사
(CBS 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270788>
⑤ 예장통합, 기금운영 부실 논란 관련 기사
(시사저널; 임창섭 기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95>
⑥ 예장통합, 연금재단 이사회의 규정신설 강행 관련 기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자)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7>

¹⁷ 대리인이 고객의 납입금을 가지고 횡령, 유용하거나 특정 투자처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위험 등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고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¹⁸ 업무규정과 투자기준, 감시감독 시스템을 사회로부터 요구받으며, 국가¹⁹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의해 (1) 전문가²⁰ 및 전산장비의 보유 (2) 적립금 운용의 최소기준 존재(분산투자(투자한도) 및 원리금보장운용방법 포함) (3) 1년마다 가입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제공 (4) 호객행위 및 불법 브로커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적발 내부통제의 운영 및 내부통제 관리자의 선임 (5)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 공시 (6) 감독기관(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7)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²¹를 받아야한다.

반면, 교단연금재단의 경우엔 기금운용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²²가 아닌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²³로 분류되지 않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근거한 금융감독원 관리감독대상도 아니다. 또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대상 회사에 속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교단연금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내부통제의 상당 부분이 교단 내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선, 각 교단의 연금재단 운영규정 검토를 통해 연금재단의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¹⁸ 투자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투자이사 결정하였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을 수 있다. 업무규정과 투자 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금융사업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투자대리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¹⁹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총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어, 금융규제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4호) 등에 근거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금융회사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희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희(금융감독원):

http://fine.fss.or.kr/main/fin_comp/fincomp_inqui/comsearch01list.jsp

²⁰ 여기서 전문가란, ① 운용관리 전문인력 :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② 연금계리 전문인력 : 보험계리사(퇴직연금 관련 경력 1년이상), ③ 전산인력 : 경력 3년이상 을 말한다.

²¹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 외감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말한다.

²² 금융감독원 관리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34호, 2019.01.30] 제2조)

²³ • 퇴직연금사업자 조희사이트 (금융감독원) : <http://100lifeplan.fss.or.kr/retirement/company2.do>

• 연금저축사업자 조희사이트 (금융감독원) : <http://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businessman.do>

■ 각 연금운용기관의 근거 법령 및 감독규정

			근거 법령 및 감독규정	
공적연금기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법, 기구 자체 운영규정	
제도권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인 연금	연금저축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사(연금보험)	보험업법	
교단연금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단 자체의 연금재단정관, 운영규정	

2) 운영현황 비교연구의 한계

본 발표는 각 교단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장로교단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더하여 최근 3개년 총회회의록 및 보고서를 추가 검토하였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내부통제제도의 경우 규정은 있으나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시행되는 장치도 있을 수 있다. 즉, 본 발표는 내부통제 설계의 효과성을 검토한 것이지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둘째, 본 발표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규정이 존재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연금재단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계로 작용한다.

본 발표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연금가입자가 연금재단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보아야 할지 알 수 있다.

둘째, 연금재단 관계자는 이후 나오는 지표들이 본인의 재단에 존재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 비교분석 근거자료

교단 명	연금재단 홈페이지 공개정보	총회 회의록·보고서
예장통합	정관,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 102 회부터 제 104 회까지 총회회의록 (2017~2019)
예장합동	연금 운영규정, 시행세칙 기금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 102 회부터 제 104 회까지 총회보고서 (2017~2019) (비공개 자료)
예장고신	정관, 시행세칙	우리 단체의 공문에 대한 회신
기장	정관, 운영세칙	제 102 회부터 제 104 회까지 총회보고서 (2017~2019)
감리교	정관, 교역자은급법, 시행규정	
기성	운영규정, 시행세칙	
예성	정관, 운영규정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는 제68차 총회에서 연금재단 해산권고안을 결의하여, 해산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교단연금재단 운영현황 분석

예장합동을 제외한 6개의 교단연금재단은 교단연금가입이 의무사항²⁴이며, 예장합동 측도 목사 안수자에게 교단 연금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교단연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통점을 갖는다.

사회의 공적연금기구(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 투자전문가로 이루어진 별도의 기금운영기구에 의해 기금을 운영함.
- ②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기준을 정하고, 운용기준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투자함.
- ③ ②에 관하여 연금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가짐.
- ④ 기금운영에 대해 위탁을 맡길시, 위탁운영사 선정기준을 정하고, 위탁운영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
- ⑤ 부정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 (ex.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의무 / 기금 출납통제 / 내부감사의 전문성 확보 / 주기적인 외부감사 등)
- ⑥ 홈페이지에 기금운용기준, 운용계획,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등을 공개하고, 운용성과와 투자 포트폴리

²⁴ [교단연금 가입대상자 규정]

예장통합 (정관 제4조), 예장합동 (연금 2 운영규정 제4조, 제5조), 예장고신 (시행세칙 제2조, 제10조), 기장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기감 (교역자은급법 제3조), 기성 (운영규칙 제4조, 제13조), 예성 (운영규정 제4조)

오를 정기적으로 공시함.

⑦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연금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

각 교단의 연금재단은 위와 같은 제도를 구비하였는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전문가로 이루어진 별도의 기금운용기구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가?

연금재단의 경우,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진 교단은 예정통합, 기장, 기감 3 곳이었으며, 나머지 3 곳은 사무국의 존재만 명문화되어있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 있긴 하였으나²⁵,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기금운용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자격의 최소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기준을 정하고, 운용기준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가?

연금기금 운용이 전문가의 의하더라도, 전문가 개인의 감이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목표수익률을 수립하여 위험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획은 가입자와의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합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과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²⁶으로 규율되고 있다. 퇴직연금 또한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과 기준을 (투자한도 등)을 법²⁶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기금운영지침, 운영계획, 계획에 의한 투자를 명문화한 곳은 예정통합 뿐이었으며, 투자한도를 정한 곳은 감리교단 뿐이었다.²⁷ 각 교단연금재단은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목표수익률과

²⁵ 예정통합 운영규정 제75조 - 기금운용위원회는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기장 운영세칙 제2조 - 임원을 구성할 때, 연금 운용 및 유사 직무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자 4인을 포함

²⁶ 국민연금법 제101조부터 제10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 시행령 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

²⁷ . 예정통합 (연금규정 제75조) (시행세칙 제38조, 제45조) 기금운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지침과 가이드라인 생성. 이 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는 외부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지침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의하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관리

. 기감 (교역자연금법 §12)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으로 운용하고, ②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언급하지만, 각 교단은 비공개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 고신 측의 경우 우리 단체에서 보낸 공문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함을 밝혔다.)

③ 기금의 구조설계와 재단운영에 관하여 연금가입자(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가?

교단연금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많은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더욱이 연금가입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안타깝게도 이와 대조적인 기사를 접하기 쉽다.

예장통합연금재단의 경우, 2018년 103회 교단총회에서 '해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돈은 '퇴직한 다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교단연금재단 이사회와 50~60대가 주축이 된 총대들에 의한 결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0~40대 목회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다른 예시는, 감리교단의 신은급법 재정이다. 2008년 도입된 신은급제도는 교역자들의 반발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리교단은 약 10년간 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²⁸

교단연금재단 내에서 가입자와 재단운영자 간에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교단연금재단은 제도개혁과 투자이사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장통합연금재단은 연금재단이사회와 독립된 연금가입자회가 별도로 존재하여 비교적 가입자들이 재단운영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기 수월할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을 보면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연금재단 이사회가 연금가입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가입자 간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가입자 전체투표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을 위탁을 맡긴다면,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의 적합성 및 위탁운영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예장통합의 경우, 예장통합 前 특별감사위원 등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약 2000억 원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2~2014). 재발 방지를 위해 예장통합은 2015년 100회 정기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의 직접 투자운용금지와 기금위탁운용을 결의하여 현재는 위탁운용사에 기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탁운용사 선정절차와 선정기준, 위탁운용사 관리(모니터링)에 있어 세밀한 규정을 설립하였다. 반면, 이 외 교단은 위탁운용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였다.

²⁸ 신은급제도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로 약 10년간 표류하다 2016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 기존 은급법에 준하는 은급제도로 회기한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김교석, 2019; 기독교타임즈)

⑤ 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연금기금은 자금의 흐름이 가시적이고, 때때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부정에 대한 고유위험이 높다. 이러한 부정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에는 ① 기금의 출납통제 ②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의무 ③ 전문성 있는 내부감사에 의한 감사 등이 있다.

먼저, 출납통제는 기금출납시 1 인이 아닌 다수의 계출인감 제출을 통해 기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7 개 교단의 경우 출납통제 관련 조항이 없었다.

둘째로, 임직원 재정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두는 것이다. 재정보증보험은 회사에 입사한 후에 중대한 과실이나 불법적인 일(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의무는 기금 1 곳만 명문화되어 있었으며, 기장의 경우 제 102 회 총회(2017)보고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전문성 있는 내부감사를 통해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감사는 부정 등을 적발할 뿐 아니라 예방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다만, 감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예장통합과, 기장은 감사 중 1 인을 공인회계사로 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감리교단은 이사회 내 감사와 관계없이, 감리회 본부에 의한 내부감사를 연 2 회,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연 2 회로 명문화하여 다른 재단들 보다 강한 규정을 두고있다. (예장고신은 감사 전문성에 대한 규정을 홈페이지 공개규정에서 찾을 수 없었으나, 우리 단체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인회계사로부터 연 2 회, 총회가 선임한 감사로부터 연 2 회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⑥ 공시 및 가입자에 대한 교육

기금운용기구는 합의된 기금운용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근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는 가입자의 암묵적 합의를 포함한다. 즉, 가입자에게 기금운용기준과 운용계획을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기준, 운용계획,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모두 공시한다.

또한, 기금상품가입자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기금의 상태는 안정적인지 등을 알 권리가 있다.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금사업자는 운용성과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반면, 교단연금의 경우 예장통합연금재단 홈페이지를 제외하면 각 연금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어디에도 현재 기금운용상태나 투자원칙 또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공시하고 있지 않다. 교단연금재단은 1년에 한번 총회를 통하여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금원칙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기금가입자는 기금운용기관과 독립된 가입자회 등을 조직하여 기금운용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²⁹

또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목회자들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연금상품에 대해 올바른 이

²⁹ 현존하는 기구로는 예장통합 연금가입자회, 예장합동 연금가입자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

연금재단의 그간의 사건사고의 원인은 간접투자상품이 가지는 고유위험을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한 데에 있다. 교단연금재단의 경우엔 기금운용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연금사업자에 비해 실정법상 규제를 덜 받는 한편, 자체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공시를 통해 상품가입자가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상품가입자가 가입 의사결정 내지 재단 운영상의 문제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三] 목회자 노후준비에 관한 논의

교단연금 역시, 여타의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교단연금 한 가지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 사회의 개인들처럼 목회자 또한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금융상품들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저축 내지 투자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상품명	설명
예금, 적금	예금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계약기간 동안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며, 적금은 계약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매달 납입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다. 예금은 목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적금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
주식	주식은 어떤 회사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발행하는, 일종의 소유 지분을 기록한 증서이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가 되어서 기업의 이익 배당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채권은 국가나 공공 기관, 금융 회사,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를 말한다. 채권을 보유하면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 외에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펀드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운용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한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한다는 장점과 운용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연금	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노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의 상품이다.

보험	보험은 가입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만든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위험 보상이외에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금보장형 장기저축보험)
----	--

(표 출처 : 금융감독원)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위험과 수익률 간에 관계로 이루어진다. 즉,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률 역시 낮다. 한편, 높은 위험을 부담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라는 특성과 맞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 이런 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독특한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저축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노후동안 나누어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노후 대비 방안은 무엇일까?³⁰ 그 방안 중 하나는 국민연금제도와 교단연금제도를 모두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교회와 목회자가 절반씩 불입하여 목회자의 노후를 대비하므로 노후 보장금액 대비 저축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인 결론은 위와 같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목회자가 노후를 준비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³⁰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다수의 목회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소속 종교인 또는 행정직원이 없는 1인 종교단체 대표목회자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김용하 외 6인(2015),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 오세웅(2014),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구조와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창국(2008),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고찰,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2
- 권혁철(2015), [세계 경제사] 앵겔스도 놀란 복지정책...노동자 향한 비스마르크의 구애였다., 한국경제 2015.01.23 지면 S9
- 남상욱(2014), 연금의 역사와 발전과정, 서원대학교 연금론 강의록
- 황명식(1999), 성결교단 연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활천 vol.545 no.4
- 김영식(2001), 달라지는 교단 연금법-교단연금,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활천 vol.577 no.12
- 최기성(2017), 목회자의 노후 관리 -교단 연금 관리를 중심으로., 성결교회와신학 vol.38
- 김교석(2019), 감리회 은급제도를 망가뜨린 '新 은급법', 기독교타임즈 2019.10.28
- 이용필(2018), '젊은 목사들 노후 대비 안 하고 돈 쓴다'는 연금재단 이사장, 뉴스앤조이 2018.09.20

성경적 관점의 연금(은급)제도

최호운

I. 들어가는 글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일환으로 8개교단이 연금재단(또는 은급재단)을 설립하였다. 교단이 설립을 주도하고 목회자가 구성원인 연금재단이 일반 사적 연금 구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연금운용 재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연금 자산 운용 과정과 투자 대상 선택에 성경적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고민의 출발선이다.

II. 연금재단의 재원

1 일반 금융상품 대비 공적연금상품의 수익률

금융자산의 미래가치는 물가인상율에 비례해서 자연증가 하므로 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도록 금융자산 운용사들은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용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사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이 가입하도록 광고하고 유치하는 것이 일반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모습이다. 수익율과 위험의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재정거래(arbitrage) 특성상 비정상적인 투기자본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금융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월등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금으로 불입하거나 수익형 펀드에 가입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자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운용자산 대비 수익률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국민연금 불입액에는 사용자가 불입하는 부담금이 있어 직장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의 100%를 추가 수익으로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개인이 사적 연금자산에 가입하는 경우 본인의 불입액만 미래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다르다는 중요한 차이 요소다.

이와는 별도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많이 불입하면 노후에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불입하면 적게 수령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금융상품 구조 형성 과정에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복지적 성격이 가미된 공적연금제도를 노후 대책의 기초수단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의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일반 사회의 연금 제도다.

2. 교단연금재단의 수입

교단연금재단이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수입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입자인 목회자가 부담하는 금액
- ②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
- ③ 교단 본부(또는 노회) 예산의 일정금액
- ④ 교단 산하 조직 수입금액의 일정금액
- ⑤ 일반 기부금

5항은 전적으로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존하는 반면 1항부터 4항까지는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1항과 2항의 경우 총회에서 교단이 결정한다고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교회의 수입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급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수입이 적은 미자립 중소형 교회와 해당 교회 소속 목회자가 여유있게 연금 불입액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12월에 연구 발표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에 따르면 종교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경제적 원인이 열거되고 있다.

〈표 III-21〉 국민연금 불응 이유

(단위: 명(%))

구 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502	210 (41.8)	167 (33.3)	109 (21.7)	12 (2.4)	2 (0.4)	1 (0.2)	1 (0.2)
개신교 전체	183	115 (62.8)	47 (25.7)	19 (10.4)	1 (0.5)	0 (0.0)	0 (0.0)	1 (0.5)
예장합동	88	57 (64.8)	21 (23.9)	9 (10.2)	0 (0.0)	0 (0.0)	0 (0.0)	1 (1.1)
예장통합	62	34 (54.8)	20 (32.3)	7 (11.3)	1 (1.6)	0 (0.0)	0 (0.0)	0 (0.0)
기장	14	7 (50.0)	5 (35.7)	2 (14.3)	0 (0.0)	0 (0.0)	0 (0.0)	0 (0.0)
감리회	19	17 (89.5)	1 (5.3)	1 (5.3)	0 (0.0)	0 (0.0)	0 (0.0)	0 (0.0)
불교 전체	200	82 (41.0)	89 (44.5)	16 (8.0)	10 (5.0)	2 (1.0)	1 (0.5)	0 (0.0)
조계종	158	68 (43.0)	75 (47.5)	4 (2.5)	10 (6.3)	1 (2.4)	0 (0.0)	0 (0.0)
태고종	42	14 (33.3)	14 (33.3)	12 (28.6)	0 (0.0)	1 (2.4)	1 (2.4)	0 (0.0)
천주교	119	13 (10.9)	31 (26.1)	74 (62.2)	1 (0.8)	0 (0.0)	0 (0.0)	0 (0.0)
교구	97	11 (11.3)	20 (20.6)	65 (67.0)	1 (1.0)	0 (0.0)	0 (0.0)	0 (0.0)
수도회	22	2 (9.1)	11 (50.0)	9 (40.9)	0 (0.0)	0 (0.0)	0 (0.0)	0 (0.0)

주 :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종교인이라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③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 못느낌(교단에서 보장)
 ④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 ⑤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중이라서
 ⑥ 기타: 연령이 높아서 / ⑦ 기타: 기회를 놓쳐서

또한, 경제적이유가 목회자가 교단 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미납 사유로 꼽히는 점은 목회자들이 노후 보장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현재의 부족한 경제적 여유로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Ⅲ-24〉 교단 연금(은급)제도 부담금 미납 이유

(단위: 명(%))

	소계	예정합동	예정통합	기장	감리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0 (65.2)	18 (64.3)	7 (100)	1 (100)	4 (40.0)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	3 (6.5)	2 (7.1)	0 (0.0)	0 (0.0)	1 (10.0)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	3 (6.5)	3 (10.7)	0 (0.0)	0 (0.0)	0 (0.0)
노후 준비 필요성 없음	1 (2.2)	0 (0.0)	0 (0.0)	0 (0.0)	1 (10.0)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	7 (15.2)	3 (10.7)	0 (0.0)	0 (0.0)	4 (40.0)
기타: 부목사는 연금 가입이 안 됨	2 (4.3)	2 (7.1)	0 (0.0)	0 (0.0)	0 (0.0)
합계	46 (100)	28 (100)	7 (100)	1 (100)	10 (100)

현재도 경제적 여유가 없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불안한 경제적 상황이 목회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남는 점은 인정하기 싫은 현실적 상황이다.

즉, 본인의 불입액을 기초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연금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자립 중소형교회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목회자의 노후 보장에 대한 고려는 목회자와 소속 교회가 불입하는 부담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소속 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찾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Ⅲ. 은급재단과 연금재단

초기에는 연금재단의 명칭을 은급재단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은급재단', '연금재단', '공제회' 3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급재단	연금재단	공제회	복지회
장로회(합동) 장로회(고신) 기감 교역자 예성 교역자	장로회(통합) 기장총회	기성 교역자 기하성 교역자연금	기침 교역자

(* 기침은 교단 내부 부서로 운영)

가) 은급(恩給)

일제 강점기에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매월 봉급의 2% 또는 1%를 부담금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일정한 연한을 채운 후 퇴직하면 급여의 1/3 상당액을 연금 형식의 은급(恩給)으로 지급하던 제도 (은급법 제59조, 제2절 은급급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은급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매월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시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가없이 받는 은혜로운 급여(恩給)는 아니지만 용어가 품고 있는 은혜로운(?) 의미로 인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감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은급을 보장하기로 한 1984년 총회에서의 결정이 2001년에 10년마다 1개월분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변경되고, 2004년에는 3년마다 1개월분 생활비를 교역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은급제도가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가는 중이다.

고신의 경우 은급재단임에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타가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면서 '은급'이란 명칭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일반 연금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합동의 경우 또한 동일하게 납입금과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수익자부담 구조다.

나) 연금

연금재단으로 운영하는 통합, 기장, 예성 교단은 납입금액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수익자부담 구조이며, 노회 부담금이 별도의 추가재원으로 유입된다.

기성의 경우 2001년 이전까지는 부담한 금액과 무관하게 목회 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은급금 성격이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납입금과 납입기간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의 연금급여 구조로 변경되었다.

다) 연금기금 고갈

연금 재단의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은급구조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연금 구조로 변경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향후 지급할 연금수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이한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가입자인 목회자의 부담금을 늘리고 미래 예상되는 연금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은급재단의 운영 원칙이 은급재단이 성서적 배경으로 언급하는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사도행전 2:44~45) 말씀의 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연금 재단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1) 수입 관점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은 씨를 뿌린 만큼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유혹하며, 이 땅에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 통제 욕구를 자극한다. 미래에 회수할 것이 예상되어야만 현재의 재산을 미래를 위해 던질 수 있다면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두고 본인이 확보한 양식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청하는 부자의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시련과 극심한 가난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나눈 마게도냐 교회의 정신인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8:14)는 연보(捐補)의 정신과 전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주되심(Lordship)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은급재단을 나만의 노후에 대한 보장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으로 은급재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내는 부담금으로 나보다 어려운 목회자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그래서 각 구성원이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 은급 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양을 치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연금재단의 운영방식에서 사랑의 연보 정신이 살아있을 때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2) 재원 조달 종류

목회자와 교회가 부담하는 불입금과 추가로 납입되는 교단과 교단 산하조직의 기여금, 일반 후원금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특성상 연금재단 기금이라고 특별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자립 중소형교회와 소속 목회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규모는 재정 규모 측면에서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적게 납부한 사람이 적게 가져간다는 전제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자립 중소형교회부터 나오는 부담금 규모의 대소 여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또는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본인이 속한 지역(교회)의 개별 목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공동체, 공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역교회 또는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많아 지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집행된 예산 규모를 축소보고하는 것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추고 일부만 내어 놓은 행동과 같은 행동이다.

이와는 별개로 은급재단에 목회자 이외 일반 성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회에서 현금한 금액이 재단으로 흘러 가기도 하지만 은급재단에 직접적으로 후원할 마음이 생긴 성도들이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재단의 정관에 후원금을 수입의 종류로 열거는 하지만 거액 후원자만 기대하고 일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절차와 통로를 홍보하지 않으면 지역교회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렵다.

3) 지출 측면

연금급여 지출액은 반드시 연금 운용수익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 본다.

일반 사회의 연금 상품은 원금(기금)과 운용수익,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즉, 연금지급전까지는 불입한 원금을 기금성격으로 보아 계속 원본 불입액을 유지하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1) 목회자 본인이 불입한 부담금 규모가 소액이어서 연금 지급액 계산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입한 연금을 일정한 조건하에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나가도록 하고, 2) 매년 교회와 교단(또는 노회)이 부담한 부담금을 소속 목회자의 목회연한, 나이와 가족 인원 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등을 주지만 매년 교회와 노회가 부담한 부담금 전액을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매년 연금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의미

인가?

수입이 많은 교회이건 적은 교회이건 차별없이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되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모두 노후 생활비로 지급한다. 연금혜택을 받는 목회자들은 본인이 속한 교회의 부담 규모와 무관하게 본인의 생활 상황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되는 방식이다. 큰 교회의 넉넉함이 작은 교회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 목회자 서로간에 균등하게 보충되게 하는 구조다.

교회 수와 교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연금급여 수급 대상자인 목회자가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은급의 정신과 연금운용 방식을 혼동한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더불어 같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떡이 많으면 같이 여유 있게 나누지만 나눌 떡이 적으면 조금씩 양보해서 적더라도 같이 나누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연금지급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감소한다고 제도변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불어 같이 나누는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다.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을 사랑의 공동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성립이 안되는 얘기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 목회자와 은퇴목회자간 반목이 발생한다. 심지어 다른 노회에서 이명 해온 목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노회가 나온다.³¹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준비한 은급재단이 목회자들간 반목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다. 각자의 기득권 확보여부를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mammon의 숨겨진 전략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다.

IV. 연금운용원칙

가) 연금기금 운용 원칙

³¹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 C헤럴드, 2020.4.13

연금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보면 재산 운용방법으로 다음의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 금융기관에 예입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직접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 금융기관에 위탁운용
- 교회, 가입자 등의 대부
- 부동산 매매, 임대업
-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

위의 내용은 일반 기금관리 운용사의 규정과 다를 바가 없다.

기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정하고는 있지만 교단 연금기금이 착한 투자를 하는 지, 은급기금이 투자하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등 자산 운영의 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투자해서는 안되는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는 펀드가 고금리 대부업체, 담배 회사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우다.

또한 연금 자산의 관리 방향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최소화임을 우선적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나) 의사결정구조

은급재단은 법적으로는 재단이사들이 경영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아니다. 목회자, 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수급자인 은퇴 목회자, 중견 목회자, 미래 수급자인 젊은 목회자, 일반성도, 기금 관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서 결정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V. 나가는 글

교단 연금재단 운용이 일반 금융 상품 운용 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없다면 굳이 교단별로 연금재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일반 사회는 건강보험제도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적 제도 안에 건강보험과 같이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제도가 있는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아닌 사랑의 연보정신으로 운영되는 은급재단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